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도관은 국가형사사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수용자의 교정·교화 및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,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나, 현행 「교도관직무규칙」의 기본강령에는 교도관 상호 간의 예절 준수 및 공·사생활에서의 모범적 행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, 교도관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

이에 교도관 상호 간(상급자·하급자 및 동료 간)의 예절 준수 의무와 공적·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기본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교도관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정 조직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법무부령 제 호

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제4호부터 제6호로 한다.

3. 교도관은 상급자·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, 공적·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본강령)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.	제3조(기본강령) ----- ----- 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3. 교도관은 상급자·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 고, 공적·사적 생활에서 국민 의 모범이 된다.</u>
3. ~ 5. (생략)	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 와 같음)